

1.

첫번째는 옵트인(opt in) 방식으로 어떤 것에 동의하기로 한다는 의미로 사전에 미리 동의를 획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 정보 제공 약관에 사전 동의하는 것.

둘째로 옵트아웃방식(opt out) 방식은 동의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전 동의를 획득하지 않아도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광고 메일이더라도 1회는 수신해야 하며, 메일 하단에 명시된 방법으로 메일을 거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광고메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

2.

의미 :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 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일컫는 말임.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2가지 기능

첫째로 휘발성은 데이터에 생애 주기가 존재하여 일정 시간이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항목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

둘째로 자기결정권은 데이터 게시 후 복제와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때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삭제될 수 있는 기능